

# 코로나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2판 개정사항

〈'22.3.11(금),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〉

## □ 주요 개정 사항

### ① 사례정의 변경 및 신고·보고체계 개정

※ 한 달 간 (3월 14일 ~ 4월 13일)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

- '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', '응급용 선별검사' 양성+유증상자를 확진환자 정의에 추가
- (의료기관) RAT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이면서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즉시 확진 환자 신고, 다만,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,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

#### ※ 확진환자

-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
-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▶

▶ 한 달 간 (3월 14일 ~ 4월 13일까지)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

▶ 증상이 있고,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,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

※ 주의: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,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결과 양성이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음

#### ◇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

- 코로나19 유전자(PCR) 검출, 바이러스 분리
-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, 응급용 선별검사(긴급사용승인 제품) 양성\*
- \* 한 달 간 (3.14~4.13까지)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

#### ◇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

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

※ 지자체는 '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'을 수시로 확인하여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된 확진환자에 대해 양성 통보, 격리통지, 확진자 조사 및 재택치료 배정 등의 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함

### ② 확진환자 및 접촉자관리 방안 변경 (기시행)

- (기본원칙) 중증, 고위험군 우선 관리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
- 격리 통지서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 (양성 통보시 격리통지 문자 동시 전송 권고),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
- (동거인)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(권고 준수 기간 10일)
- (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)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자가격리 (격리조치 7일, 격리해제 후 3일간 자율관리)

### ③ 격리해제 및 자가격리 세부사항 변경 (기시행)

- (확진자 격리) 법정 격리 시작일을 격리통지일(양성결과 확인일)로 명확화
  - \* 격리해제일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(24:00) + 증상 호전 등
- (자가격리 해제전 검사) 해외입국자, 재택치료 공동격리자의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(6~7일차)를 PCR에서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로 변경
  - \*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은 자가격리 해제전(6~7일차) PCR 검사 실시

### ④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재격리 등 조치 명시

- (격리해제 부적정) 기존 격리해제 처리 취소 및 재격리, 병상배정 조치 등 환자관리에 필요한 조치 적용

## □ 향후 계획

- 「코로나19 대응 지침(지자체용) 제12판」 개정 및 시행('22.3.14일)